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93
------------	------

2025년 9월 9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11일, 최재란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3. 상정일자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9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재란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사회 전반에서 생활체육시설 부족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받는 대상을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로 하고, 주민의 범위에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1일 최재란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993호로 발의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이용료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전체 구성원 중 50% 이상이 지역주민이나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학교 소재 자치구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기존 교육·복지·교통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과 비효율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로 하여금 행정구역 중심의 공적 서비스 제공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게 합니다.
- 최근 몇 년간 언론보도를 통해 언급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행정 경계 조정 요구(서울시 노원구-경기도 의정부시),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⁵⁾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광역버스 증차 문제⁶⁾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술한 배경에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학교나 직장이 해당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등도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학교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생활권 중심의 이용료 체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문에 관한 검토

1)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검토(안 제9조제1항제2호의 가목)

- 안 제9조제1항제2호의 가목은 현행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ED%8A%B82023/65413](#) (검색일 2025-8-26)

4) 황신섭 기자(2022.4.25.), '생활권은 서울, 행정구역은 의정부'...수락리버시티 1·2단지 주민 울화통, <프레스리안>,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2513030602225> (검색일 2025-8-26)

5) 박태훈 기자(2023.11.6.), 마강래 박사 "김포 서울편입, 판도라 상자 열려...생활권 일치 요구 봇물", <뉴스 1>,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221612> (검색일 2025-8-26)

6) 김동욱·하재홍·손용현 기자(2024.7.31.), [해마다 느려지는 '광역버스' ③] 서울 "도로 수용 한계" vs 경기 "주요인 아냐", <중부일보>,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65121> (검색일 2025-8-26)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하던 것을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경우” 에도 적용하고, 주민의 범위를 학교나 직장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는 그동안 동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 되는 자치구 거주 주민에 대한 범위를 “단체 구성원의 50% 이상” 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등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감면 제도에 반영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범위를 “학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진 주민” 에서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직장인과 학생” 으로 확대해 포용적인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집행기관 의견에 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본 조례안에 관해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해당 자치구 주민 5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하는 것은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시설 우선 사용 대상과 동일하고, 주민의 범위에 직장 소재지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 역시 최근의 조례 제정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10439, 2025.8.20.).⁷⁾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주민으로만 구성된 단체와 직장 등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단체를 구분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 구체적으로 안 제9조제1항제2호의 가목에는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의 주민인 단체가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7)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0439, 2025.8.20.)

감면받도록 하되, 안 제9조제1항제2호 다목을 신설하여 직장 등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가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인 단체는 이용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하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 이어 100분의 40을 감면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전체 구성원 중 50% 이상이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에서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실거주하는 주민의 시설 이용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수범자에게 행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단, 교육청 의견 중 “근무하는 직장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으로 감면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재학 중인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이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욱이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참여 등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규정한 조례에서 이미 직장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서울시에 있는 경우에도 조례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1]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시민, 이용대상 등에 포함한 조례

조례명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용대상)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 · 직원 4.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대안교육기관법」, 「평생교육법」의 학교,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 그러므로 동 조례안에 집행기관의 수정의견을 반영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 근무하는 직장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실거주하는 주민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한 주민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을 반영함과 동시에 감면 대상을 더욱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의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가목 신설).

Ⅶ.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93
----------	------------

제안연월일 : 2025년 9월 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실거주하는 주민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수요를 직장이나 학교 등이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주민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학교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조정하고자 함.
- 또한,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을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 재학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으로 하는 등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한 주민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에만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의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함(안 제9조제1항제

4호 가목 신설).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중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를 삭제하고, 안 같은항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00분의 40 감면

가.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 재학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조례안	수정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생략) 2. 100분의 60 감면 가. <u>학교가</u>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u>주민으로</u>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 활동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4. (생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u>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u>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u>주민(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u>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 활동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4. (현행과 같음) <u><신설></u> <u><신설></u>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가. <u>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u>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u>주민으로</u>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 활동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 (조례안과 같음) 4. 100분의 40 감면 가. <u>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u>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

현 행	조 례 안	수 정 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는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 점을 포함한다), 재 학하는 학교의 소재 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 동이나 생활체육활 동을 위해 6개월 이 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u> 5. (조례안 제4호와 같음) ②~③ (조례안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중 “학교”를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로 하고, 같은항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00분의 40 감면

가.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 재학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8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생략) 2. 100분의 60 감면 가. <u>학교</u>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 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 는 경우 3.~4. (생략) ②~③ (생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u>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u>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 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100분의 40 감면 가. <u>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 재학하는 학교의 소재 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